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15. . .	
연월일	(제 회)	

부 산 광 역 시 부 산 진 구 와 연 제 구 의

관 할 구 역 변 경 에 관 한 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종섭 (행정자치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5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하나의 아파트단지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으로 분리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15. . . ~ . .)

2) 행정규제: 해당없음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285의 4번지, 285의 7번지, 285의 56번지, 488의 1번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고시·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·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·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·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

따라 변경되는 자치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 지역은 변경되기 전 자치구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	
연 락 처	02-2100-3817